

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2299
------	------

2018. 2. 26
기획경제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11월 28일, 이병해 의원 외 11명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29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78회 임시회】

-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(2018.2.26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토론, 의결(수정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이병해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

지원위원회의 역할을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, 동 위원회의 위원에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.

2. 주요내용

-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함(안 제5조제3항제 8호 신설).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윤병국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본 개정안은 장애인기업활동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희망경제위원회에 장애인기업과 장애인정책에 대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,

나. 희망경제위원회의 운영 현황

- 서울시는 경제정책사무 전반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희망경제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,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「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‘희망경제위원회 조례’)에서 규정하고 있음.
- 희망경제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행정1부시장, 경제기획관 등을 당연직으로 하고 산업 및 경제 관련 분야의 시민단체 활동 경력자, 대학의 부교수 이상 재직자,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등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.
- 현재 희망경제위원회는 총 26명으로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9명 이내의 위원들을 구성된 2개의 분과위원회와 1개의 특별위원회를 각각 두고 있음(붙임문서 1 참조).

<분과 및 특별위원회 현황>

위원회명	자문분야	위원명수
산업경제 분과위원회	지역경제 활성화 주요시책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정책사항	7명
생활경제 분과위원회	물가안정·소비자보호 등의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사항	8명
플뿌리경제 특별위원회	대·중·소기업의 동반성장 및 중소기업·중소상공인 보호·육성과 관련한 사항	9명

다. 희망경제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문제점

- 이같이 희망경제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산업경제 분과위원회, 생활경제 분과위원회, 플뿌리경제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등 사실상 서울시의 산업·경제 전 분야에 걸쳐 방대한 영역에 대한 의견수렴과 조정을 담당하는 최고 정책자문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
- 한편, 2017년 1월에 제정된 「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」는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을 희망경제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면서¹⁾ 희망경제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제4조 기능에

1) 「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」 제9조(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) ①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둔다.

1.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제7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제8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「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가 심의한다. 이

“ 「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」 제9조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”을 신설하였음.²⁾

- ‘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’는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, 지원사업, 장애인 우대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희망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산업과 경제 분야의 당연직 공무원, 교수, 연구위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나 장애인기업활동 정책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‘장애인기업 및 장애인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’을 위원 구성에 명시하도록 규정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.

라. 종합의견

- 장애인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」에서 별도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 희망경제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것은 당초 희망경제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존중한 취지로 판단됨.
- 하지만 장애인기업 조례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조례에서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의무화된 장애인기업 지원계획은 아직 수립된 바가 없으

경우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로 본다.

2) 「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.

11. 「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」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

며 장애인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역시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기업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임.

-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 및 동법 시행령³⁾에서 매년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총구매액의 1%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실적은 아직 법정 의무 구매비율에 미달되고 있음.

<최근 5년간 법령에 따른 서울시의 공공구매 실적>

구 분		법정의무 구매비율	'13년	'14년	'15년	'16년	'17년
중 소 기 업 제 품		총구매액의 50% 이상	66.6 (5.0↑)	66.1 (↓0.5)	66.2 (0.1↑)	73.8 (7.6↑)	75.5 (1.7↑)
기 술 개 발 제 품		중소기업물품의 10% 이상	7.5 (5.0↑)	5.6 (2.0↓)	7.6 (2.0↑)	15.0 (7.4↑)	14.6 (0.4↓)
여 성 기 업 제 품	물 품	물품 총구매액 5% 이상	5.0 (0.6↑)	5.7 (0.7↑)	6.5 (0.8↑)	8.6 (2.1↑)	8.2 (0.4↓)
	공 사	공사 총구매액 3% 이상	2.5 (0.5↑)	4.3 (1.8↑)	4.4 (0.1↑)	6.3 (1.9↑)	7.1 (0.8↑)
	용 역	용역 총구매액 5% 이상	7.7 (1.3↑)	6.9 (0.8↓)	8.8 (1.8↑)	8.3 (0.5↓)	10.7 (2.4↑)
장 애 인 기 업		총구매액의 1% 이상	0.4 (0.2↑)	0.5 (0.1↑)	0.5 (-)	0.8 (0.3↑)	0.8 (-)

3)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 제9조의2(공공기관의 우선 구매)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(이하 이 조에서 "장애인기업제품"이라 한다)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

② 공공기관의 장이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,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」 제7조의2(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비율) 법 제9조의2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. 다만,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비율을 100분의 1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- 따라서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희망경제위원회의 위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본 개정안은 현재 미흡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사업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.
- 한편, 희망경제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제4조의 일부 각호에서 인용되고 있는 법규명 등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반영된 부분이 있어 이를 함께 개정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함.

<조례 제4조의 법개정 정비대상 수정의견>

현행 조례	수정의견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. 1.~4.(생략)	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. 1.~4.(현행과 같음)
5. 「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서 정한 2이상의 산업·경제에 관한 위원회간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항 6.~7.(생략)	5.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서 정한 2이상의 산업·경제에 관한 위원회간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항 6.~7.(현행과 같음)
8.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	8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 15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9.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에 따른 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.~16.(생략)	9.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.~16.(현행과 같음)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없음」

V. 토론요지 : 「생략」

VI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(재적위원 11명, 참석위원 7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299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8년 2월 26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조례에 인용된 법규의 일부가 폐지 또는 법규명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반영되어 해당 규정들을 정비하여 법령과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“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0조” 등 일부 문구를 변경된 법규명에 맞게 개정함(안 제4조)

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5호 중 “「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하고 제4조제8호 중 “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0조”를 “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5”로 하며, 제4조제9호 중 “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”을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정안
<p>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.</p> <p>1. ~ 4.(생략)</p> <p>5. 「<u>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</u>」 제2조에서 정한 2 이상의 산업·경제에 관한 위원회간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항</p> <p>6. ~ 7.(생략)</p> <p>8. 「<u>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</u>」 제40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</p> <p>9. 「<u>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</u>」 제3조에 따른 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</p> <p>10. ~ 16.(생략)</p>	<p>제4조(현행과 같음)</p>	<p>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.</p> <p>1. ~ 4.(현행과 같음)</p> <p>5. 「<u>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</u>」 제2조에서 정한 2 이상의 산업·경제에 관한 위원회간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항</p> <p>6. ~ 7.(현행과 같음)</p> <p>8. 「<u>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</u>」 제62조의15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</p> <p>9. 「<u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제3조에 따른 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</p> <p>10. ~ 16.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구성) ① ~ ②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,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	<p>제5조(구성) ① ~ 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,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	<p>제5조(구성) (개정안과 같음)</p>

<p>1. ~ 7.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8. (생략)</p>	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장애인기업 및 장애인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u></p> <p>9. (현행 제8호와 같음)</p>	
---	--	--

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5호 중 “「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”로 하고 제4조제8호 중 “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0조”를 “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5”로 하며, 제4조제9호 중 “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”을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5조제3항제8호를 제5조제3항제9호로 하고, 제5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.</p> <p>1. ~ 4.(생략)</p> <p>5. 「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서 정한 2이상의 산업·경제에 관한 위원회 간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항</p> <p>6. ~ 7.(생략)</p> <p>8.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</p> <p>9.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에 따른 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</p> <p>10. ~ 16.(생략)</p>	<p>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.</p> <p>1. ~ 4.(현행과 같음)</p> <p>5.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서 정한 2이상의 산업·경제에 관한 위원회 간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항</p> <p>6. ~ 7.(현행과 같음)</p> <p>8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5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</p> <p>9.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</p> <p>10. ~ 16.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구성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,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 <p>8. (생략)</p>	<p>제5조(구성)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장애인기업 및 장애인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u></p> <p>9. (현행 제8호와 같음)</p>